행 정 명 령 서

1.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**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**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가. **처분대상 시설·업종** : [붙임]

나. **적용지역** : 전라남도 전 지역

다. **처분기간** : '21. 10. 4.(월) 0시 ~ 10. 17.(일) 24시까지

라. **처분내용** : 거리두기 3단계(기본방역수칙)를 기본으로 하되, 방역수칙[붙임] 적용

- **사적 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**
- **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**
- **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**(단,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)

① **유흥시설* 및 안마업**

* 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, **배달형태의 다방**

②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**목욕장업**

③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신고 체육시설업*** 및 **자유업 실내체육시설****

*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

** 자유업 체육시설업 : 줌바, 태보, 스피닝, 에어로빅, 요가, 필라테스, 주짓수, 해동검도, 택견, 특공무술, 스크린 양궁장, 줄넘기장, 체조교실, 볼링장, 롤러스케이트장, 인라인스케이트장, 탁구장, 스쿼시장, 실내 테니스장·배드민턴장, 실내 축구장·족구장·풋살장, 실내 클라이밍장, 펜싱, 기원(棋院)

④ 외국인 고용사업장(내·외국인 모두 포함)

⑤ 입・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

* 입항 당일 검사 원칙(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)

**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(단,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 시 제외)

⑥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

⑦ 직업소개소 운영자.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.외국인 근로자

마. **처분사유** :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연장

바. **법적근거**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사. **벌칙규정**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, 제83조제2항, 제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・조사・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10월 3일

전 라 남 도 지 사

붙임1 **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('21. 10. 4. ~ 10. 17.)**

《완화 불가한 조치》

▸ **사적 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**
▸ **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**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**3단계**+방역수칙 조정)
① 모임·행사		
	사적 모임	▸ 사적 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(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)까지 가능 **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** * 예외 ① 동거가족,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인력,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, 돌잔치의 경우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
	기타 모임·행사	▸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 ▸ (집회) 100명 이상 금지(기존 49명 + 접종완료자 50명) ▸ (행사) 100명 이상 금지(기존 49명 + 접종완료자 50명) **- 집회·행사의 경우, 기존 인원(49명)과 접종완료자(50명)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** * 모임·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
② 1그룹 시설		
	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**▸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 ▸ 시설 면적 **8㎡당 1명 인원 제한** * 클럽, 나이트는 **10m²당 1명** 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▸ (감성주점, 헌팅포차, 단란주점) 춤추기 금지
	콜라텍·무도장	**▸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(수기명부 불가) **▸ 시설 면적 10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▸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**3단계**+방역수칙 조정)
	홀덤펍·홀덤게임장	▸ 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▸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, 미설치 시 사람(플레이어)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
③ 2그룹 시설		
	식당·카페 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	▸ **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** ▸ **22시~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·이용 금지** ▸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▸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^{2}이상) ▸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편의점 (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)	▸ **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** ▸ **22시~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·이용 금지**
	노래(코인)연습장	▸ 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, 30분 간 환기) *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(예:뮤비방 등)은 노래(코인)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
	목욕장업 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시설 등)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▸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▸ **수면실 이용금지**
	실내체육시설 (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)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* GX류 운동(그룹댄스운동,스피닝,에어로빅 등), 체육도장(태권도, 유도 등)은 6㎡당 1명 인원 제한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(단, 수영장은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제한)**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**3단계**+방역수칙 조정)
		▸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▸ **샤워실 운영금지**(단, 수영장은 한칸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)
	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(방문판매, 후원방문 판매업 제외)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** ▸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▸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④ 3그룹 시설		
	학원 등	▸ **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
	영화관·공연장	▸ **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**(정규공연시설*) 기본방역수칙 적용** ▸ **(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) 6㎡당 1명 + 최대 2,000명 이내** *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
	독서실·스터디카페	▸ **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*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(푸드존 등)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
	결혼식장	▸ **(식사 제공시)**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(기존 49명+ 접종완료자 50명)+ 홀별 4㎡당 1명 가능 - **기존 인원(49명)과 접종완료자*(50명)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** *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▸ **(식사 미제공시)** 개별 결혼식당 최대 199명(기존 99명+ 접종완료자 100명)+ 홀별 4㎡당 1명 가능 - **기존 인원(99명)과 접종완료자*(100명)을 포함하여 총 199명까지 가능** *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 가능 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* 단, 8명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

구분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**3단계**+방역수칙 조정)
장례식장	▸ 개별 빈소별당 최대 99명(기존 49명+ 접종완료자 50명)+홀별 4㎡당 1명 가능 - **기존 인원(49명)과 접종완료자*(50명)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** *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실내체육시설 (비교적 중·저강도 운동)	**▸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**▸ 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▸ 샤워실 운영금지** ▸ 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
유원시설	**▸ 수용인원의 50%** *** 종합·일반·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%** ▸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▸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▸ 이용자 간 2m(최소1m)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
오락실·멀티방	**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**▸ 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㎡ 이상)	**▸ 운영시간 제한 없음** **▸ 출입명부(안심콜, QR코드 등)관리** *** 대규모점포 및 3,000㎡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 대상(각각 규모 300㎡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, 전통시장 제외)** ▸ 집객행사 금지 ▸ 출입자 발열체크
PC방	**▸ 좌석 한 칸 띄우기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** **▸ 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마스크 상시 착용 ▸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****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** ▸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**3단계**+방역수칙 조정)
⑤ 기타 시설		
	스포츠경기(관람)장	▸ **(실내) 경기장 수용인원의 20%** ▸ **(실외) 경기장 수용인원의 30%** ▸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 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,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
	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	▸ **수용인원의 20%**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불가)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	▸ **시설 면적 6㎡당 1명의 50%로 인원 제한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실외체육시설	▸ **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** **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**샤워실 운영금지**
	숙박시설	▸ **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** * 객실 내 '정원'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▸ **전 객실의 3/4 운영** ▸ 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) * 홀 대여는 제외
	파티룸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**파티* 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** * 각종 파티(각종 생일잔치(돌, 회갑, 고희연 등), 크리스마스 파티, 송년회, 신년회, 결혼·출산기념 파티 등)
	도서관	▸ **수용인원의 50%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	키즈카페	▸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 ▸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**3단계**+방역수칙 조정)
	돌잔치 또는 돌잔치전문점	▸ **개별 돌잔치 단위 50명* 미만 + 4㎡당 1명 인원 제한** *** 접종미완료자 16명 +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 가능** ▸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m²이상)
	전시회·박람회	▸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 *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·시식공간 이용 ▸ **사전 예약제 운영(의무)** ▸ **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**
	마사지업소, 안마소	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
	이·미용업	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,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
	국제회의·학술행사	▸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▸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▸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, 사전등록제 운영 ▸ **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*가 아닌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** *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* '학술행사': 대학·연구기관·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, 학문·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(심포지엄, 컨퍼런스, 세미나, 워크숍 등을 포함)
종교시설 방역수칙		
	종교시설	▸ **전체 수용인원의 30%*(기존 20% + 접종완료자 10%)** 대면예배 참석 가능 *** 접종완료자로만 수용인원의 10% 추가하여 최대 30%까지 가능** ▸ **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** *** 단,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** ▸ 종교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*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▸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 ▸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**3단계**+방역수칙 조정)
사업장 방역수칙		
	사업장	▸ **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제외) :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(권고)**
	물류센터	▸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
	콜센터	▸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
다중이용시설		
	공용공간 (실내시설 내 흡연실)	▸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